긴급입찰 사유서

1. 공사 개요

가. 공 사 명 : 신길동 일원 하수관로 정비공사(1단계)

나. 위　　치 :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648번지 일원

다. 공사기간 : 착수일로부터 15개월

라. 내　　용 : 오수관로 신설 및 폐쇄 등 1.42km

마. 총공사비 : 금6,834,365,000원(금육십팔억삼천사백삼십육만오천원)

- 도급예정액 : 5,976,381,000원
- 관급자재대 : 857,984,000원

2. 긴급입찰에 부치는 사유

가. 관련근거 :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35조 제4항 제2호, 제3호

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

1. 제19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의 경우
2. **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**
3. **국가사업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사업과 연계되어 사업의 일정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**
4.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 예방·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
5. 그 밖에 제2호 또는 제3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입찰을 긴급히 입찰공고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

나. 긴급입찰 사유

○ 수자원공사 출연금 보조사업으로 상반기 집행실적 제고 및 재정 신속집행

2026.　10.　.

안산시 상하수도사업소장

2026-10-26 10:50:37 ***.***.144.158 하수과 김*정